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삭제함(안 제18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